

【진도군 공고 제2020 - 244호】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하오니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4. 1.

진 도 군 수



1. 목 적

- 우기철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범람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,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·관리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항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고자 함.

2. 행정예고 기간 : 2020. 4. 1. ~ 4. 22.(21일간)

3. 의견제출 기간 : 2020. 4. 1. ~ 4. 22.(21일간)

4. 공고방법 : 진도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
5. 관계법령

-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(예고대상)

6. 의견제출

- 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도군 건설교통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61-540-3499)
- 다. 제출기한 : 2020. 4. 22. 18:00까지
- 라. 제출처 :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(진도군청) 건설교통과
- 마. 문의처 : 진도군청 건설교통과 (061-540-3487)
- 바. 처리방향 :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7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

○ 지구현황 및 내용

지구명	위 치	지정 내용			비 고
		유형	등급	면적(m ²)	
해창지구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848~포산리 2433	침수 위험지구	가	106.51	
염대지구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칠전리 2153-13~포산리 2657	침수 위험지구	가	80.64	

- 지정사유 : 우기 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범람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손실 등의 우려가 있어 정비를 통해 재해요인을 해소코자 함.

8.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(예정)

지구명	사업비 (백만원)	사업내용	사업시기	비고
해창지구	39,510	축제 및 보축 10.5km, 호안정비 4.4km, 교량 재가설 3개소, 낙차공 개량 및 신설 4개소 등	2020년 이후(예정)	
염대지구	29,540	축제 및 보축 8.5km, 호안정비 3.0km, 교량 재가설 6개소, 낙차공 개량 3개소 등		

- ※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내용, 사업예정 시기는 예산(국·도비) 지원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될 수 있음.

9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행위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음.

【진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】

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.

1.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. 단,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·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(留水)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.
2.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
3.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
4.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

- 붙임 1. 해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위치도 및 전경사진 각 1부.
2. 염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위치도 및 전경사진 각 1부.
3. 의견서(제출서식)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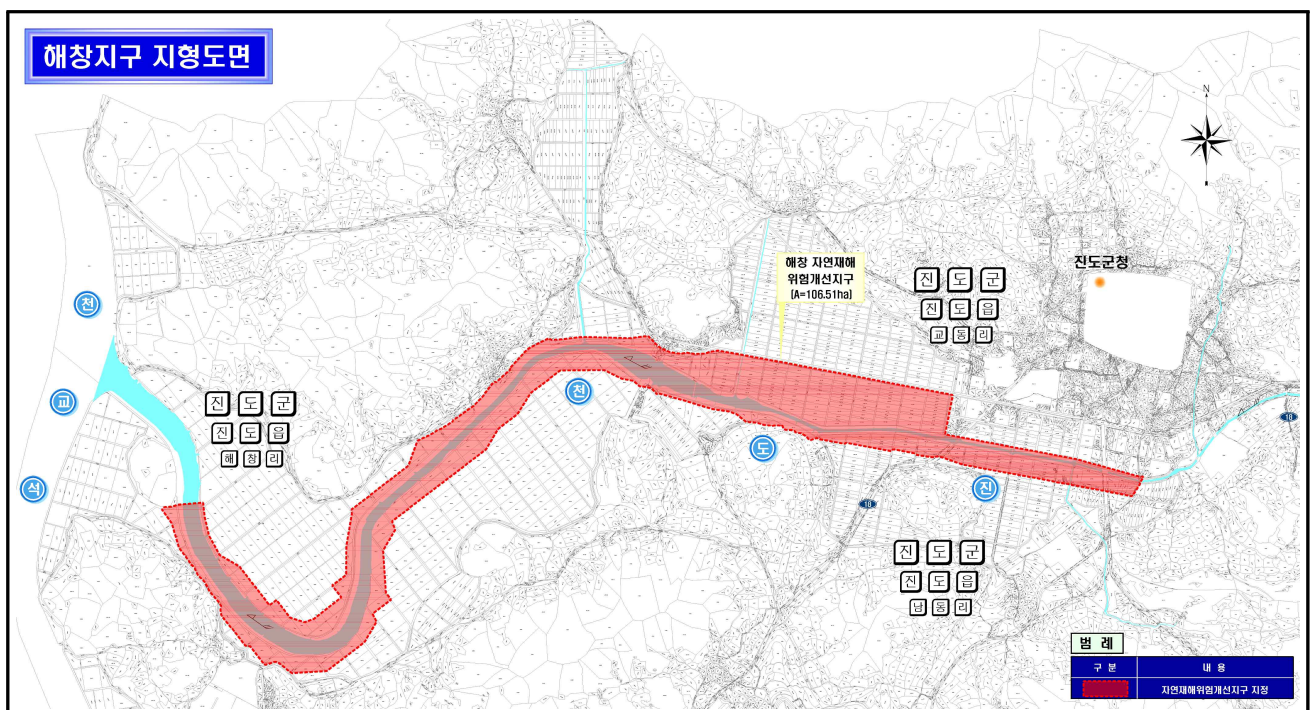
<붙임1>

□ 현황평면도



□ 지형도면

※ 「토지이용기본 규제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은 붉은색으로 표기



□피해사진(진도천)



2019.6. 중류 농경지 침수



2012.8. 중류 시장 침수



2012.8. 하류 가옥 침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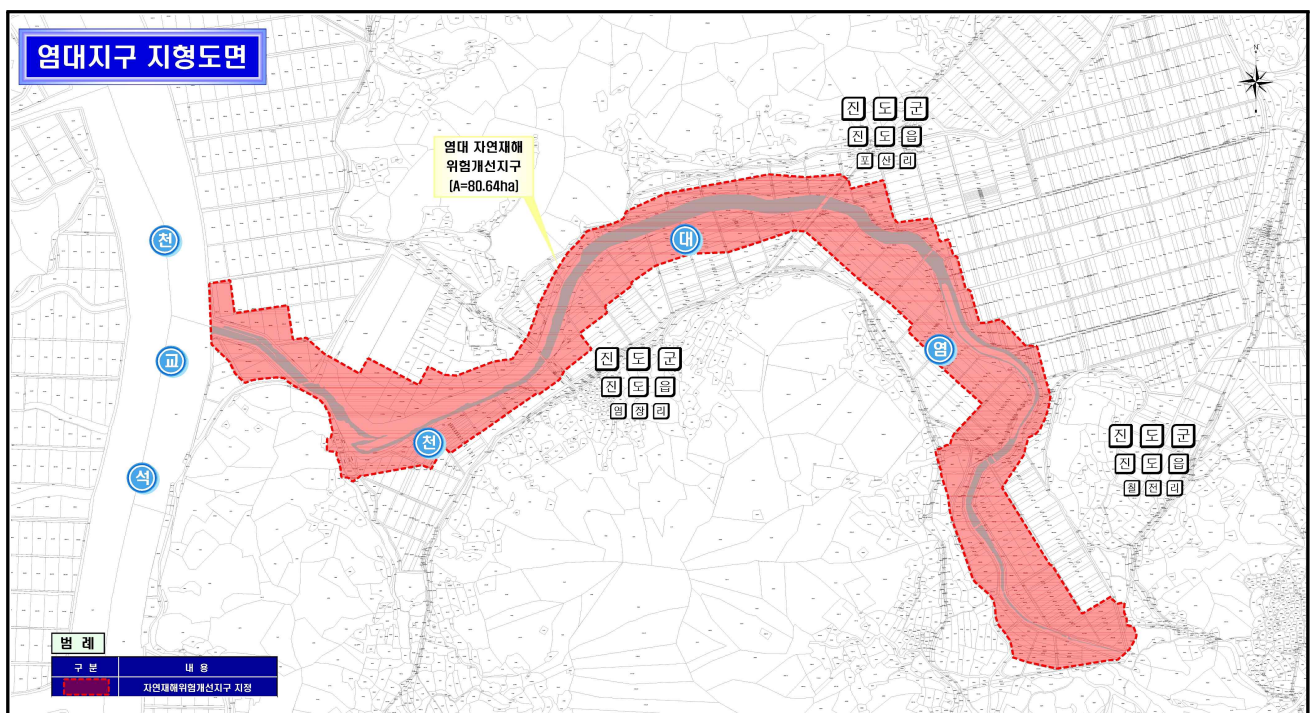
<붙임2>

□ 현황평면도



□ 지형도면

※ 「토지이용기본 규제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은 붉은색으로 표기



□피해사진(염대천)



2019.10. 하류 농경지 침수



2012.8. 중류 가옥 침수



2012.8. 하류 농경지 침수

